

새로 제정된 언론중재법의 내용과 과제

황 용 경

(경남중재부장, 창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1. 머리말

2005. 1. 27. 법률 제7370호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이 제정, 공포되어 2005. 7. 28.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로써 언론의 자유와 책임이 명확해지고, 국민의 권리도 한층 신장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정비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고, 언론중재법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언론과 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토론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언론중재법의 제정 경위

가. 헌법 및 민법의 관계 규정

헌법은 제10조에 행복추구권, 제17조에 사생활 보호, 제 19조에 양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1조에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규정,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764조에서는 명예를 침해당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단순한 금전배상을 넘어서 명예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는 필연적으로 타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이의 조화로운 운용은 민주주의 사회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할 것이다.

나. 제정 경위

1980년 말 ‘언론기본법’ 제정 시 독일의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출판법상의 반론보도청구권 규정을 모델로 한 ‘정정보도청구권’(사실은 ‘반론보도청구권’임)이 도입되면서 프랑스 및 독일에서부터 비롯된 ‘반론권’이라는 제도를 도입함에 따른 충격과 혼란을 흡수하는 완충장치와 이 제도의 조화로운 실현을 위하여 문 ‘언론중재위원회’의 제도가 도입, 설립되었다.

위 언론기본법이 1987. 11. 28. 폐지됨과 더불어 언론기본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은 그 명칭 및 골격이 유지된 채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방송법’에 분리 수용되었다가 1991. 12. 31. ‘종합유선방송법’이 제정되면서 종합유선방송에 대하여도 동일한 취지의 ‘정정보도청구권’이 인정되었다.

1995. 12. 31. 정간물법 개정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이라는 명칭 대신 ‘반론보도청구권’이라는 명실상부한 정식 명칭으로 바뀌게 되었다.

언론중재법은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방송법’, ‘민법’ 등 각 개별법에 분산 규정되어 있던 언론피해구제제도를 포괄하여 하나의 법에 단일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언론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인격권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제정되었다고 한다.

3. 언론중재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